

#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이 상 도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머리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 피의자 보도의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얼마 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와 그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피의자 보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다. 나아가 2004년 12월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례처럼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사회생활까지 어렵게 하는 등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신원이 공개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언론에 의한 범죄 혐의 또는 범죄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 범죄 보도는 개인의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

해를 수반하게 되고, 피의자의 유·무죄 혹은 증거 가치를 예단케 하는 보도는 형사절차상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는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는 인격권 내지 형사절차와 서로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범죄 피의자는 늘 약자의 지위에 있기 마련이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포죄, 명예훼손죄,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기관의 범죄 사실 공표와 관련한 피의사실공포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언론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언론매체에 보도될 경우에는 형사절차상에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 보도와 관련한 피의자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가 인격권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논의한다. 피의자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와 판례,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고, 피의자 보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우리 언론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짚어 보고자 한다.

## 2.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보도 사례 및 판례

조선일보는 최근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 조승희 씨 누나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선

일보는 지난 4월 20일자 A9면에 '너무 다른 누나 / 해외 인턴 참가...9·11 희생자 돕기 / 현재 국무부 용역서비스 지원사에'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조 씨와 세 살 터울인 누나의 실명과 나이, 학교, 직장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2003년 태국에서 찍은 사진(얼굴 부분 모자이크 처리)까지 공개했다(미디어오늘, 2007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는 또, 조 씨의 누나가 2003년 대학시절 학교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담을 교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승희 씨가 미국 방송사에 보낸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신문사가 무더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월례회의를 열어 "버지니아 참사 용의자 조승희 씨가 만든 동영상과 스틸사진 가운데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28개 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연합뉴스와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0곳 모두를 비롯해 경제지 5곳, 스포츠지 4곳, 지역일간지 8곳 등이 포함됐다. 신문윤리위는 "정작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 NBC는 이들 사진 등을 보도한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지나친 상업성과 선정성에 편중된 '황색보도'라는 비난을 받고 이의 방영을 자제하기로 했음에도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으나  
유명 무살해

국내 통신과 신문들이 이 같은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와 나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6월 발생한 경기도 연천 GP의 수류탄 투척·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언론이 피의자 김 모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고, 평소 게임을 즐겼다는 점과 범행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를 하는 등 사태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005년 6월 20일자 사회면 '김 일병은 누구 입대 전 실연...정신병력 없어'에서 김 일병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와 사진, 실명을 모두 공개했고, 가족관계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입대 전 실연 경력까지 소개해 실연과 범행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남겼다. 조선일보는 사망한 박 모 상병과 애인의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서울신문도 같은 날짜 가판에 김 일병의 사진과 실명, 가족관계까지 소개했다가 배달판에서 사진만 삭제했다. 동아일보도 21일자 '김 일병, 내성적이고 컴퓨터 게임 즐겨'에서 가족관계와 성장과정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심희 사건' 피의자 가족들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각각 9,000만 원씩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의 처 구 모 씨,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처 김 모 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구속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구속자들의 가족과 회사를 게재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하고 “중앙일보 또한 구속자들의 실명과 사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관행적 보도 행태인 “경찰이 ○ 모 씨에 대해 ○○○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식의 보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천 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지난 2003년 12월 12일 이주협 전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련 해고특위위원장이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인천’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진 이번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점으로 경찰조서를 인용 보도하는 범죄 보도의 취재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이) 경찰 내부분서를 열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은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신문사들)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각각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원고(피의자)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의자인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 측의 취재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구속영장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취재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더 나아가 ‘충분한 취재 의무’와 ‘반론 게재의 구체적 범위’를 적시(揭示)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5월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익명보도와 관련 “실명이 아니더라도 두 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해도 (기사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됐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3. 언론의 보도 행태와 폐해

우리 언론의 범죄 보도 경향에서 폭로 보도, 혐의 보도, 선정적 보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진국, 2002). 먼저 폭로 보도를 살펴보면, 우리 언론에서 살인, 강도 등 전통적인 개인 범죄를 보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범죄 유형들이 기사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최근 들어 탐사보도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보도들이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언급되고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은 혐의 위주로 보도된다는 점이다. 보도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관행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80% 이상의 기사가 재판 전(前) 단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박용규, 2001). 용의 단계 내지 수사 단계의 혐의 보도에 치중하는 이유는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며, 경찰이나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 홍보에 적극적인 반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찾는다. 독자들도 피의자 검거 이후의 과정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이다. 혐의 위주 보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후조치에 의한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장 내지 잠입 취재도 피의자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 위장 내지 잠입 취재는 기자가 취재대상 직업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 가장하여 취재하거나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취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위장 취재가 성행하는 원인은 정상적인 취재방법으로는 취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몰래카메라에 의한 위장 취재는 TV뉴스나 시사매거진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타나는 취재기법이다. 비교적 손쉽게 사진이나 관련 서류, 진술 등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윤리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취재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보도된 혐의 사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이재경, 1997). 많은 언론들이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취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잠입 취재, 탐사 취재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접근한다. 잠입 취재 또는 탐사 취재는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 기능 및 사회 안정화 기능 등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가해지며 나아가 폭로일변도의 취재원 확보는 언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점에서 언론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내밀 영역이 침해되어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보도 내용도 언론사와 기자들의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이 범한 범죄의 행위 묘사가 여과없이 보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

편집 작업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위험성도 있다.

선정적인 보도는 청소년의 모방 범죄 등 일탈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범죄 보도 과정에서 언론매체는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이나 인격권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조명보다는 흥미와 자극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중범죄의 경우, 언

론의 보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과 그들이 범한 범죄 행위의 묘사가 여과 없이 보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상업성과 영리성은 언론사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에서 비롯되는 기자들의 경쟁의식은 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보도에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 4. 피의자 보도의 한계

범죄 사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혐의 보도는 엄격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혐의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를 하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표현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 자체만으로 피의자나 그 주변인물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임

병국, 2005). 피의자 보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장발부와 공소제기 등 수사절차와 공판 및 상소절차를 거쳐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 보도는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의 정도를 높이려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재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수사기록까지 건네 준 경우에는, 기사가 부적법한 제보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다. 혐의사실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그 기사 내용에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 7. 15. 선고 99나17731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9427판결). 이들 판례는 우리 언론의 보도 한계를 제시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적인 사항이나 피의자의 가족 등 주위의 인물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혐의자나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흥밋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은 실명, 사인은 익명보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범죄 보도의 경우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보도를 하여야 한다(박재선, 2006). 법원은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이나 초상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공인의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공적 인물론’에 따라 범인이나 범죄혐의자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 등으로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비록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혐

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실명이나 초상 보도가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이 요구되는데, 이 때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한, 언론은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고 수사할 방침이라는 요지 정도의 보도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면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7.1.17 선고 96나4659, 96나4666(병합)판결). 언론사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하여 보도한 것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판결).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이익형량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보도행위의 적합성과 필요성 및 균형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도에서 언론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범죄 사건의 진실성, 사건의 내용, 사건의 발원지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려는 입장에 있다.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 하여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면책된다는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판례 원칙으로 확립하고, 한편 언론 보도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에 원칙적으로 진실 확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전과 등 사적인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보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반면, 일반 사인에 대하여는 범죄 사실 보도의 경우

에도 익명보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천명하는 등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 독일의 경우 인격권 영역을 내밀(內密) 영역(Intimsphäre), 비밀 영역(Geimsphäre), 사적(私的) 영역(Pri-vatsphäre), 사회적 영역(Sozial-sphäre), 공개적 영역(Öffentli-ckheitssphäre)으로 구분하여 견

**범죄혐의 보도는 엄격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야하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적 사항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해가 제시되고 있다(김재형, 1999). 내밀 영역은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을 뜻하는데, 성적(性的)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비밀 영역은 이성적으로 평가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 영역이다.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 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직업적·영업적 기록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사적 영역은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영역으로, 결혼 전 이야기, 부부간의 다툼, 종교적 신념 등이 이에 속한다. 사적 영역은 내밀 영역과 달리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여야 하는데, 제반사정에 비춰 정보의 이익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에 관해 공표하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 사회적 영역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으로,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이에 속한다. 사적 영역보다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영역이다. 공개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 생활의 영역이다.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 영역이 이에 속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사진을 영리목적의

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좀 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생성되었는데, 프로서(Prosser) 교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1) 원고의 신체적·장소적·개인 영역에 대한 침입 또는 그 사적 사항에 대한 침투 (2) 사생활의 공개 (3)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4) 성명 또는 초상 등에 대한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허위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하여 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미국과는 달리 초상권, 성명권을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5. 맺음말

언론은 피의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사 사법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 제공에 의존하여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도할 내용을 신중하

게 검토하는 언론매체의 주의 의무 의식이 필요하다. 보도대상자에게 반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에만연한 경쟁풍토의 보도관행은 심층적 보도관행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죄 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관련자의 신원 관련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 자체에 있고, 관련자의 초상까지 알 권리가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보도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초상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지 의문스러운 사례에는 관련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초상 보도가 자제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관계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고, 초기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 들어 위자료 인정액수의 상승 현상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결코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만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기관 역시 국민의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과 제도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자문 또는 고문변호사를 두어, 과거에 비해 언론사들의 보도대상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많은 관심을 쏟고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의자 보도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인격권 보호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보도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춰야하는 요청이 있다. 피의자 보도에 따른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언론의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민·형사상 구제 제도의 정비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사후구제조치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사들이 사전에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억지력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필자는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에 따르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청에 맞춰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언론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면 언론사가 보도내용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효적으로 억지하게 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언론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관점에서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악의적·반사회적·비도덕적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으로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이다(이민영, 2006).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피의자의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무척 어려우므로 언론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영·미법상의 제도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의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언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높여 무거운 경제적 손실을 부담케 하는 방향으로 민사재판이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면 언론사는

피의자 보호 등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관한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선택(2004).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고려법학』, 43권.  
 김재형(1999).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 39권1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김형진(2000). 언론보도와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하여.  
 박용규(2001). 한국 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박재선(2006). 공인은 실명 가능, 사인은 익명보도, 『신문과 방송』, 2006년 6월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참고자료』.  
 이민영(2006).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 제18권 8호.  
 이재경(1997).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점,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이진국(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병국(2005).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